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중 앙 지 방 협 력 회 의 의 구 성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7호,
'22.1.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 실무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추가 구성원(안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추가 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 관련 사항(안 제3조~제7조)

- 1) 정례회의(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및 임시회의(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의 개최 주기를 규정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통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안을 배부하도록 함. (안 제3조)
- 2) 의안의 종류를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실질적인 심의
의결 기능을 위한 ‘의사정족수(구성원 2/3이상 출석)’ 및 ‘의결정족수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기준을 수립 함. (안 제4조)

3)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구성원의 대리출석 범위 및 대리출석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안 제5조)

4) 협력회의 지원단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정책 수용성을 제고 하도록 함. (안 제6조)

5)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관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제9조)

1) 협력회의 구성원에 분권위원장·균형위원장을 추가하였으므로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 함. (안 제8조)

2)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도 동일한 출석으로 간주하고 대리출석 범위 및 대리출석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안 제9조)

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개최 등 업무 지원을 위한 협력회의 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대통령령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법 제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개최 등) 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정례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친 의안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협력회의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안 및 정족수) ①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참석하게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의안은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하며, 심의사항이란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③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의 구분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참석하게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석 등) ① 협력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

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1.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 차관
4.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 법제처 차장
6.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

③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회의록 등)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력회의

지원단장으로 하여금 회의의 일시·장소·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록 공개 여부는 협력회의 이전에 실무협의회 협의를 통해 사전 결정한다. 다만, 협력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심의 결과 이행 관리) ① 협력회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계획, 이행 상황 및 이행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의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협력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협력회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이행 관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치분권위원장이 자치분권기획단장으로 지명하는 사람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균형위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공동으로 기획단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실무협의회는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출석 등) ① 실무협의회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인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회의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소속의 고위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4.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 지명하는 1명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 지명하는 1명

제10조(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① 협력회의 운영 및 실무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원단의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④ 협력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력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⑥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및 복무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협력회의 지원단 구성·운영, 실무회의 개최 등 제1회 협력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44) 205 - 3103